서울특별시 재활용품 수집·관리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 안 경 위

가. 발 의 자 : 송아량 의원

나. 의안번호 : 제1081호

다. 발의일자 : 2019. 10. 16.

라. 회부일자 : 2019. 10. 22.

2. 제 안 사 유

○ 생활이 어려운 재활용품 수집·관리인의 안전한 수집활동을 위한 행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시민 복지 증진 및 자원 재활용 촉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 요 내 용

가. 재활용품 수집·관리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규정함(안 제3조의2 신설).

나. 수집·관리인 선정 시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4조).

다. 조문의 문구를 어문 규범에 맞도록 수정함(안 제6조).

라. 구청장이 수집·관리인에 대하여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7조제3항 신설).

4. 참 고 사 항

가. 관련 법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나. 예산 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조

다. 기　　타: 해당사항 없음

5. 검 토 의 견

가. 개요

○ 본 조례안은 생활이 어려운 재활용품 수집·관리인의 안전한 수집활동을 위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재활용품 수집·관리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수집·관리인 선발 시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선발하며, 안전교육 비용을 지원하려는 것임.

나. 검토의견

1) 서울시 재활용정거장 및 수집관리인 현황

○ 재활용정거장이란 재활용품을 분리배출하기 위하여 임시적, 일시적으로 설치한 이동식 거점으로, 서울시는 2013년부터 운영을 시작한 이래 총 1만 개소 이상의 정거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13억8천6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음.

<서울시 재활용정거장 운영 현황>

구분	2017				2018				2019(9월말)			
	소계	이동식	도시형	클린하우스	소계	이동식	도시형	클린하우스	소계	이동식	도시형	클린하우스
개소	3,466	981	2,366	119	7,717	870	6,727	120	10,499	847	9,548	104
예산(백만원)	1,131				1,341				1,386			

○ 재활용정거장은 재활용품을 수거시간에 맞춰 설치와 철거를 반복하는 이동식과 연립, 빌라 및 다세대 주택 내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위해 설치하는 도시형 및 주택가 공용지역에 고정 설치하여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클린하우스 등으로 분류됨.

<서울시 재활용정거장의 형태 및 관련 사진>

이동식 정거장	도시형생활주택 정거장(고정식)	클린하우스 정거장(고정식)

○ 재활용정거장을 관리하는 수집관리인은 2019년 현재 총 663명으로 이 중 65세 이상 노인(340명)과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45명) 등의 취약계층이 385명으로 58%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통장(92명)과 일반 시민(186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서울시 재활용정거장 수집관리인 구성 현황>

구 분	계	65세 이상	통장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일반
수집관리인(명)	663	340	92	45	186
비율(%)	100	51	14	7	28

○ 수집관리인은 현행 조례에 따라 관할 지역 주민자치센터(동장)의 추천으로 자치구에서 선정하고 있고 선정된 자 중에서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자에게만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며(제6조), 수집관리인의 자격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하루 3~4시간씩 주당 1~2회 근무에 따른 지원 금액은 월 12만원이 원칙이지만, 65세 이상이고 기초연금수급자인 경우 9개월간은 월 27만원, 나머지 3개월간은 월 12만원을 지급받고 있음.

2) 조례안 검토

○ 안 제3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집·관리인에 대한 실태 조사는 현재 매년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조례에 명문화하는 것에 대한 이견은 없음.

다만, 실태조사는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전 절차이므로 현행 조례 제3조를 제3조의2로 하고,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제3조로 신설하는 것이 적절할 것임.

○ 현재 수집관리인은 65세 이상, 국민기초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이 58%를 차지하고 하고 있지만, 안 제4조와 같이 수집관리인 선발 시 노인, 장애인 등의 취약계층을 우선 선발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노인 및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적 지원 측면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판단됨.

다만, 조례에 수집관리인 우선 선발 대상을 규정함에 있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항의 수급권자와 같은 법 제2조제10항의 차상위계층을 포함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안 제7조제3항은 수집·관리인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게 하고 그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음.

다만, 교통안전교육을 여름철 폭염(온열질환) 및 겨울철 한파(한랭질환) 등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포함하는 포괄적 문구인 안전교육으로 수정하며, 비용 지원 주체가 조례안의 취지와 달리 구청장으로 되어 있어 이를 시장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참고자료]

□ 2019년 서울시 재활용정거장 운영 현황(9월말 현재)

(단위: 개소)

연번	구별	계	이동식	도 시 형 생활주택	클린 하우스	수집관리인
계		10,499	847	9,548	104	663
1	종로구	196	13	183	0	
2	중구	157	70	87	0	
3	용산구	90	0	90	0	
4	성동구	408	0	408	0	
5	광진구	454	0	454	0	
6	동대문구	216	16	200	0	22
7	중랑구	160	0	160	0	
8	성북구	84	0	84	0	
9	강북구	1,806	0	1,806	0	
10	도봉구	417	0	417	0	
11	노원구	222	86	133	3	80
12	은평구	327	126	201	0	155
13	서대문구	236	156	80	0	
14	마포구	200	0	200	0	
15	양천구	223	23	187	13	46
16	강서구	436	0	432	4	
17	구로구	98	0	98	0	
18	금천구	340	158	161	21	152
19	영등포구	453	94	310	49	70
20	동작구	186	0	176	10	
21	관악구	1,133	0	1,129	4	
22	서초구	1,500	0	1,500	0	
23	강남구	23	0	23	0	
24	송파구	846	105	741	0	138
25	강동구	288	0	288	0	